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개선사항 안내

① 다태아 임신부 지원금 인상

-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신청 다태아(쌍태아 이상) 임신부부터 적용
- 지원 금액 : 90만원
  - 시행일 이전 기존 신청자 소급적용 불가, “신청일자 기준”

ex) '16.12.31. 다태아 신규신청 지원금액 : 70만원  
 '17. 1. 1. 다태아 신규신청 지원금액 : 90만원  
 '16.12.31. 일태아 신규신청 → '17. 1. 1. 다태아 변경신고 지원금액 : 70만원

〈 '17년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 구분 〉

대상자 구분	지원금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일태아 + 분만취약지	70만원
다태아 + 분만취약지	110만원

② 분만취약지 변경 지정에 따른 지원금 추가지원지역 변경적용

○ 2017년 분만취약지 현황 (옹진군 등 34곳)

시도	시군구	비고
인천(1)	옹진군	※ 보건복지부 「2017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
강원(6)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7)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 2016년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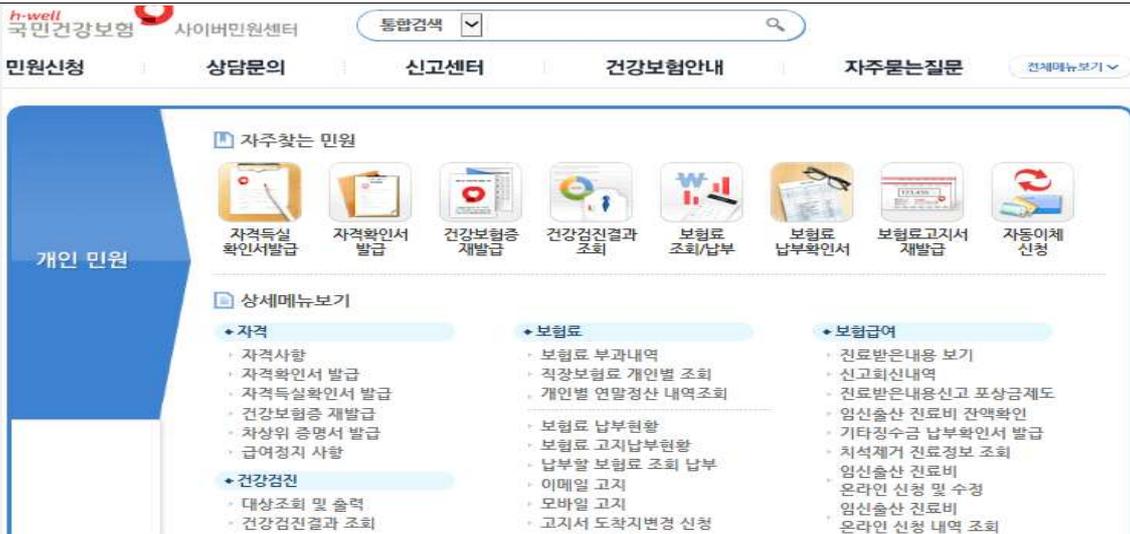
- ▶ 분만취약지 제외지역 : 태백시, 해남군, 순창군, 구례군
- ▶ 분만취약지 추가지역 : 산청군

... 16년 12월 신청자 중 17년 취약지 제외지역에 30일 미만 거주자의 경우, 공단 행망자료 확인하여 30일 경과시점에 추가지원금 지급처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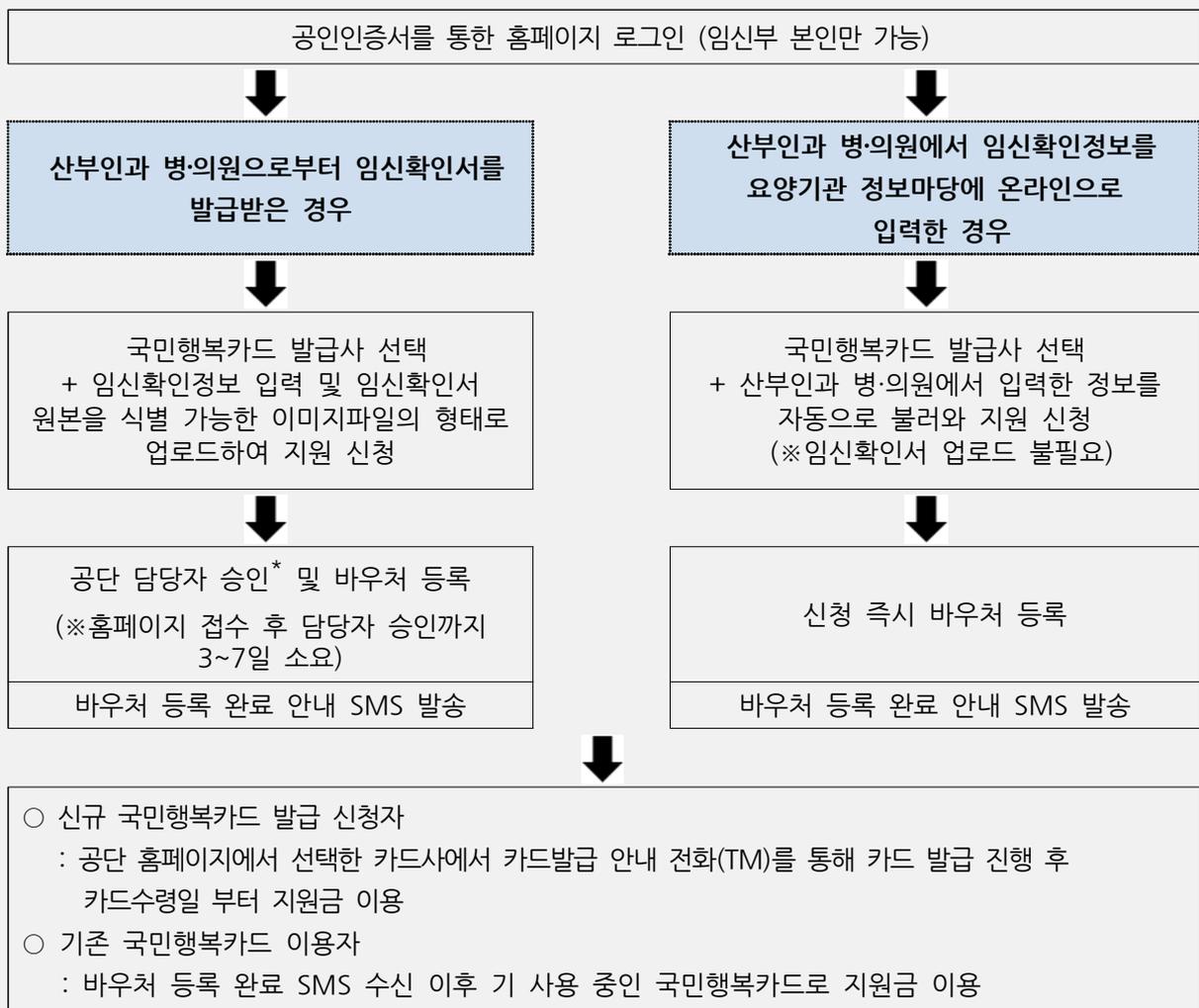
### ③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오픈 (17년 1월 中 오픈)

\* 경로 :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및 수정**”



###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바우처 신청 절차



… 시행초기, 본부에서 담당자 승인 작업 일괄 처리(지사 및 지역본부 업무 부담 최소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 및 개선 사항

Q-1

17년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적용 시기 및 대상자 그리고 인상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1

네, 2017년 1월 1일 이후 다태아(쌍태아 이상) 임신부로 임신기간 중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지원금액(7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된 **9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일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기존 지원금액(50만원)과 동일

Q-2

16년도에 이미 지원신청을 한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인상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A-2

안타깝게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이미 지원신청을 한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인상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3조 및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0호(2016.12.30.)에 의거, 시행일인 17.1.1. 이후 신규 신청한 다태아 임신부부터 9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3

16년도에 신청한 내역을 취소/해지하고 17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지원 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A-3

기존에 신청된 내역을 취소 또는 해지(삭제불가) 후 동일한 임신확인서의 내용으로 신규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한 내역에 따른 포인트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Q-4

16년도에 일태아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17년 1월 1일 이후 다태아로 임신확인 되어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인상금액 적용기준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규신청일입니다. 따라서, 16년도에 일태아로 신규신청을 한 후 다태아고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규신청 시점의 다태아 지원금(7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2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5****분만취약지 추가지원 대상 지역의 변동이 있나요?****A-5**

보건복지부 「2017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따른 2017년도 분만취약지는 다음과 같이 옹진군을 포함한 34곳입니다. 16년도(총 37곳)와 비교하여, 제외된 지역은 태백시,해남군,순창군,구례군 4곳이며 새로 추가된 지역은 산청군 1곳입니다.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강원(6)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7)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Q-6****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6**

내국인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공단의 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외국인 대상자의 경우 기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공단에 추가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신청방법 :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으로 구비 서류 제출
- ◆ 구비서류 :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1부
  - ②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최근 7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 에서 발급 가능

**Q-7****주민등록상 태백시(17년도 분만취약지 제외지역)에 20일 거주한 임신부가 16년 12월 30일 지원신청을 한 경우,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A-7**

임신부가 분만취약지에 신청일 포함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 시점에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7년도 1월 9일까지 태백시에 거주하여 30일경과 여부가 확인되면 신규신청일이 속하는 16년도 분만취약지역 기준에 따라 추가지원 됩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A-8

네, 17년도 1월 중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공단 홈페이지 내에 개설됩니다. 임신부 본인이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지원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및 수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9

임신확인서 발급방법에 따라 공단홈페이지를 활용한 지원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기존에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바우처가 등록(등록완료 SMS메세지 발송)되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생성 되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i)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 ①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임신부 본인 공인인증서 必)
-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신청자 정보 + 임신확인서내용 입력
- ③ 임신확인서 업로드(원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및 최종신청접수
- ④ 공단 담당자 승인\* (접수 후 3~7일 소요) ➔ [바우처등록]
- ⑤ 선택한 카드사에서 신청자 휴대폰으로 카드발급안내 전화(TM) 진행

\* 담당자 승인이란?

업로드 된 임신확인서의 진위여부 (병원 직인 등)와 임신부와 입력한 임신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최종 확인 후 승인(바우처 등록)처리하게 되며, 지원신청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반려처리 됩니다.

**ii)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입력 한 경우,**

- ①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임신부 본인 공인인증서 必)
-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선택 및 병원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 확인 하여 최종 신청접수 ➔ [바우처등록]
- ③ 선택한 카드사에서 신청자 휴대폰으로 카드발급안내 전화(TM) 진행

※ 바우처 등록 이후 카드발급관련 문의는 개별 카드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 일부 금융사에서는 카드발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0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한 경우에 담당자 승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요?

A-10

네, 17년도 1월 중으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가 공단 홈페이지 내에 개설됩니다. 임신부 본인이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지원 신청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및 수정

Q-11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한 경우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11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의 공단 또는 카드사(회원은행)등 전담접수처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접수 후 담당자 승인, 연계기관 간 신청정보 송수신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공휴일 포함 최대 3~7일정도 소요될 수 있어, 분만예정일이 임박하거나 좀 더 신속한 바우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접수처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제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전임신과 재임신의 분만예정일 차이가 2개월 미만인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불가하므로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및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16. 12.30. 고시 제2016-270호(시행 2017.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64조에 따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이용권 발급,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이 고시 적용 당시 임신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정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3. “이용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며, 지정요양기관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한정한다)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임신부의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2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하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② 영 제23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용권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용권 발급 적합 여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이를 이용권발급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용권발급기관은 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임신부에게 지체 없이 이용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신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용 중 임신과 관련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신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임신부와 관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신확인서를 발급한 요양기관은 그 발급 비용을 임신부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조의2(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신부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임신부가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 등록기간이 계속해서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제4조(이용권 사용 범위 등)**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임신에 대하여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일태아의 경우에는 5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90만원이다. 이 경우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한다.

2.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각 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이용권 수령일

나. 제3조제3항 후단 및 제3조의2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한 경우: 해당 금액 생성일

3. 임신부가 제2호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 종료로 소멸된다.

**제5조(지정요양기관 지정 신청·변경 등)** ①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조산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할 것

2. 다음의 검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한 비용을 공개할 것

가. 초음파 영상

나.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양수검사로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요양기관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인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은 한약첨약(「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의 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요양기관에서 탈퇴하려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지정요양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요양기관 정보의 공개)** 공단은 임신부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요양기관 및 해당 기관의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비용을 공단 또는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
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제8조**(임신·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 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제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지역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주) 보건복지부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른 분만취약지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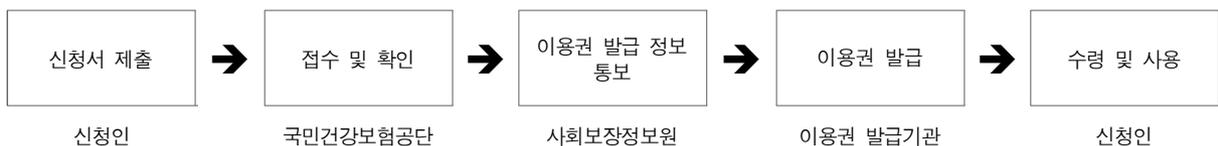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작성방법

-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의 수신은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 근로자에게 모성보호제도 등 관련 제도 및 법령 안내를 위한 선택사항입니다.
-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처리 절차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다태아구분	<input type="checkbox"/> 일태아	<input type="checkbox"/> 다태아	<input type="checkbox"/> 일태아 <input type="checkbox"/> 다태아
③ 요양기관 확인	<b>&lt;임 신 확 인 서&gt;</b>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예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input type="checkbox"/> 일태아 <input type="checkbox"/> 다태아 ( <input type="checkbox"/> 쌍태아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요양기관명(기 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내역을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 이 신고를 제출하려면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란에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또는 변경은 이 신고서로 신고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가 아래 작성방법에서 열거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 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    년    월    일</p> ※ 전입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신 신청하는 사람과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 작성방법

-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강원(6)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전남(6)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남(1)	청양군	경남(7)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비급여검사 등 비용	구분		최저금액	최고금액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첨약(임신·출산 관련) [1일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공단이 위의 정보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 및 이용권 발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변경 신고서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비급여검사 등 비용	검사명		최저금액		최고금액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산전초음파	일반					
		정밀					
		입체					
	양수검사						
한약첨약(임신·출산 관련) [1일당]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요양기관의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공단이 위의 정보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 및 이용권 발급기관에 제공하거나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에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 요양기관 탈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탈퇴일		
탈퇴사유	<input type="checkbox"/> 산부인과전문의 비상근 <input type="checkbox"/> 비급여검사 비용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한약첨약(임신·출산 관련) 비용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자진포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요양기관의 탈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